

# 11. 土地去來許可區域 再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건설부는 경기도 고양시, 파주군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'93. 3. 16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, 동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.

○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을 통상 3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있어 동 기간이 경과하면 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바

'90. 3. 17에 북방정책추진 및 통일로 주변 개발설과 관련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경기도 고양시, 파주군 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.

○ 건설부는 동 지역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

-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지정사유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

- 개발기대심리가 잠재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이며

-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투기발생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

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재지정(지정기간 : 3년, '93. 3. 17~'96. 3. 16)하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로 보전토록 엄격히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투기대상이 되기 어려운 파주군내 농업진흥지역(59.1km<sup>2</sup>)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.

다만 고양시의 농업진흥지역(6.7m<sup>2</sup>)은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자치단체장 또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지정을 요청하므로 재지정 대상에 포함하였다.

○ 재지정 지역 : 1도 1시 1군중 일부지역 367.3km<sup>2</sup>

고양시 신도동, 창릉동, 효자동, 관산동, 고양동, 고봉동, 화전동, 대덕동 : 123.5km<sup>2</sup>

파주군 파주읍, 탄현면, 월릉면, 교하면, 장단면, 조리면, 광탄면(대상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은 제외) : 243.8km<sup>2</sup>

※ 허가구역면적 : 46,177.6km<sup>2</sup>(전국토의 46.5%)→46,107.1km<sup>2</sup>(46.4%)

- 건설부는 이번 농업진흥지역의 허가구역 제외는 동 지역이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로 보전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투기대상이 되기 어렵고 농촌토지의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

앞으로 동 지역의 거래와 지가동향을 계속 점검하여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도 재지정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전체 농업진흥지역 : 10,080km<sup>2</sup>(국토의 10.2%)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